『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테크그로우(기업성장집중지원) 추가모집 시행 공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테크그로우(기업성장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 프로그램명: 테크그로우(기업성장집중지원)

□ 사업목적

○ (기술·경영 컨설팅)

- 특화 및 연계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 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ESG 컨설팅)

- ESG 경영진단을 통해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 지원

○ (시제품 고도화(TRL) 지원)

-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신규 분야의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항공우주산업 진입과 사업 전환 기반 마련
- 특화분야 지원사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기존의 판매·수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개발 기술 또는 제품의 개선 지원

□ 사업예산: 총 75백만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7년 1월 29일**

□ 지원방식: **바우처 방식** (사업비가 선정기업에 직접 교부되지 않음)

□ 분야정의

○ 특화분야: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항공우주 부품·소재

○ 연계분야: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IT, RT, NT, BT 등의 분야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지원규모 분야별 금액
테크그로우	기술·경영 컨설팅	내용	○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설계, 시험, 평가, 해석, 공정개선 등) 기술적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IPO전략, 중장기 경영전략, 글로벌 진출 등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분야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250만원 내외 (3개사 내외)
		대상	① 특구 및 진주 지역 내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 ② 컨설팅 지원을 통한 특화 및 연계분야 진출,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기업	
	ESG 컨설팅	내용	○ 기업역량진단통합플랫폼 "ESG경영진단"을 통한 ESG 경영 진단 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250만원 미만 (1개사 내외)
		대상	① 특구 및 진주 지역 내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	
	시제품 고도화 (TRL) 지원	내용	○ 특화분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확보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 및 연구재료 구입 지원 ○ 기개발 기술 또는 제품의 개선을 위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 및 연구재료 구입 지원	1,500만원 (4개사 내외)
		대상	① 진주지역 내 연계분야 기업 중 특화분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② 특구 및 진주 지역 내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판매, 수출 제품 보유기업)	

※ 진주강소특구지역 내 소재 기업 우대[자료1 참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확인 필수]
※ 진주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 필수
※ (기술·경영, ESG 컨설팅) 1개 분야 컨설턴트 1명 매칭 가능
※ ESG 컨설팅 신청기업은 "기업역량진단통합플랫폼-ESG경영진단"보고서 제출 [자료2 참고]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에서 매칭후 지원해야 함
※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건수 및 지원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컨설팅(기술·경영, ESG) 분야의 적격 기업 미달 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시제품 고도화(TRL) 지원 분야의 차순위 과제(60점 이상)로 예산을 조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신청기업에 귀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사업 수행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신청기업(수혜기업)에 귀속됨

□ 기술료 징수: 해당 없음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경남진주강소특구)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 (신청기업·수행기관) 컨설팅 결과보고서

- 공고 모집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유도
- 공정한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 추진절차

공고·접수		선정평가		사업수행		결과보고		최종평가
공고 및 신청기업 접수	⇨	수혜기업 선정평가	⇨	컨설팅 및 연구 수행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최종평가
공고일로부터~ 11. 25.(수)까지		2026. 11. 27.(금)		협약일 ~2027. 1. 29.(금)		~2027. 1월 중		2027. 2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제외대상 및 관련 법령

□ **지원제외 대상**

컨설팅 지원 시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검토사항	내용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검토사항	내용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관리지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4 평가절차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2026년 11월 27일 (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구분	기술·경영 컨설팅	ESG 컨설팅	시제품 고도화(TRL) 지원
평가항목	• 컨설팅 주제 및 기업과의 연계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컨설턴트 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등	• 컨설팅 주제 및 기업과의 연계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컨설턴트 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등	• 추진계획의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사업비 계획의 적정성 • 지원 효과성 및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등
유의사항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선정(단, 60점 미만 지원 제외) ※ 강소특구 소재 기업 우대(동점자의 경우)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로 진행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경상국립대학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 접수방법: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

연번		제출서류	서식	비 고
필수	1	사업신청 공문	-	신청기업 자사 양식
	2	사업 신청서	서식 1호	지원분야에 따라 양식 상이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 경우
	5	최근 3개년도('23~'25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협약시 제출 가능
	8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2호	신청기업, 컨설턴트
	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서식 3호	신청기업, 컨설턴트
	10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4호	신청기업, 컨설턴트
해당시	11	ESG 경영진단 보고서 (신청 마감일 이내 보고서 인정)		ESG 컨설팅 신청 기업
	12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기술·경영·ESG 컨설팅 분야 신청기업(컨설턴트)
	13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 진주시 관내로 본점 이전)	서식 5호	진주 외 신청기업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신청서 내 국가12대전략기술 작성 필수
①반도체 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접수기간: 2026. 11. 20.(금) ~ 11. 25.(수) 16:00까지 [기한엄수]**

○ 접 수 처: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innopolis@gnu.ac.kr)

○ 문 의 처

구분	연락처	E-mail	주소	기관
테크그로우	055-772-4847 055-772-4844	innopolis@gnu.ac.kr	(우)52725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18동 303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 및 향후 경남진주강소특구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동일 시제품 제작, 동일 주제의 컨설팅 등)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선정된 기관은 경남진주강소특구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컨설턴트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을 적용받지 않음

□ 신청서상 연락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통지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을 철회(해약)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연구개발비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1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지 확인

○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내 주소 검색 후 범례(연구개발특구) 확인

1. 토지이음 접속 후 사업장 주소 입력하여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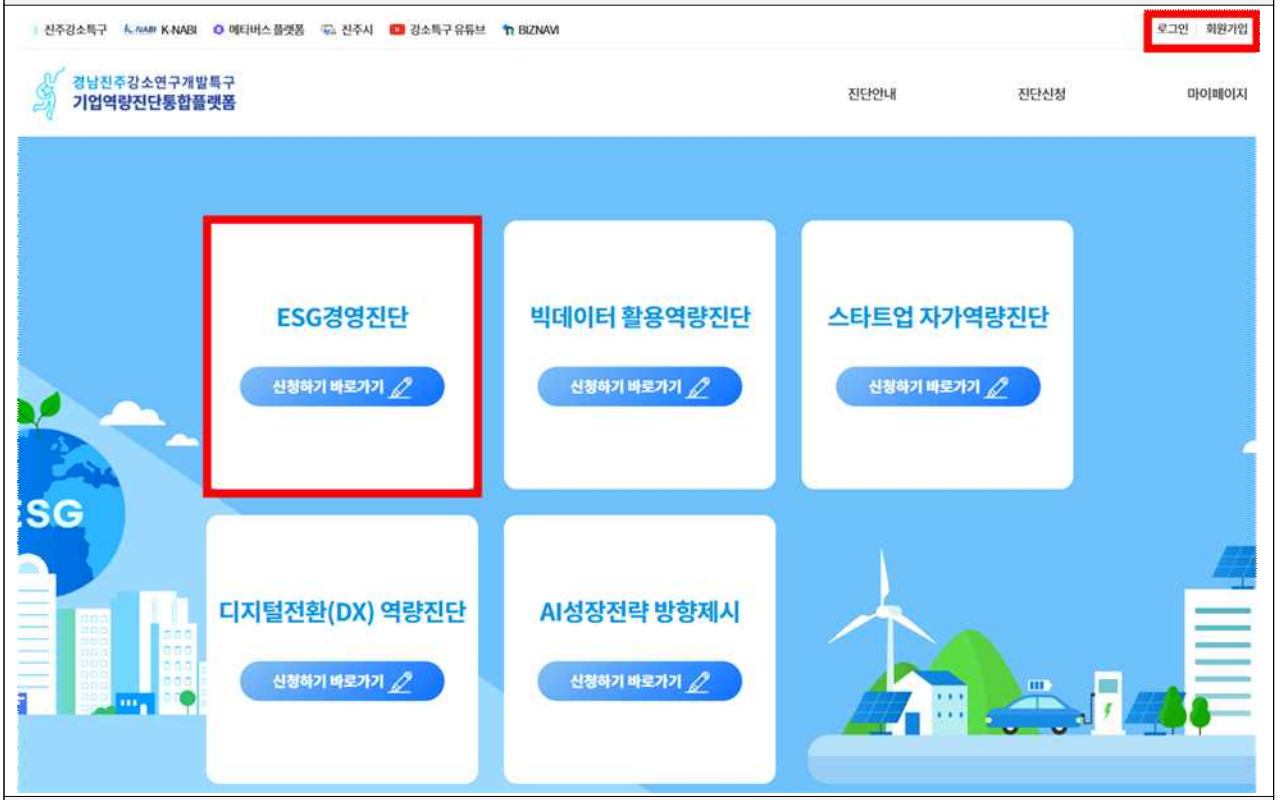
2. 검색 결과에서 범례(연구개발특구) 유무 확인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지목	학교용지	면적	278,987 ㎡
개별공시지가(㎡당)	598,000원 (2025/01) 연도별보기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대학(2020-06-25)(대학교06)(저촉) , 대학(대학교06)(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R&D융합지구(경상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강소연구개발특구 경상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하천구역(가좌천)<하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자료2 기업역량진단통합플랫폼 - ESG경영진단

○ 기업역량진단통합플랫폼(https://innopolisjinju.com/platform/)에 접속하여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ESG 경영진단 실시하고, ESG 경영진단 보고서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1. 기업역량진단통합플랫폼 접속 및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ESG 경영진단 실시



2. 마이페이지 - ESG 경영진단 보고서 출력

